

## 외부 재단 과학 연구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에 관한 위임 사항

1. 이 위임사항은 NPAFC 과학연구를 위한 특별기금 (특별기금) 이외에 NPAFC와 기금 제공 기관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약정이나 양해각서에 의해 NPAFC가 수령하는 과학연구 보조금이나 기금에 적용된다. 외부 기금의 목적은 위원회의 정책, 목표, 및 활동과 합치되어야 한다
2. 사무국은 위원회를 대신하여 외부 재단에 과학 연구를 위한 보조금이나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과학연구통계소위원회 (CSRS)가 작성 및 추천하고 위원회가 승인한다. 외부 기금의 적시 신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례회의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신청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우편 투표로 결정한다.
3. 보조금이나 기금은 NPAFC와 기금 제공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나 양해각서에 따라 사용한다. 사무국은 기금 제공 기관과 체결한 계약이나 양해각서의 사본을 당사국들의 요청시 송부할 수 있다. 서면 계약이나 양해각서는 해당 기금수령인의 기관장과 NPAFC 사무국장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계약서나 양해각서에는 지출이 승인된 기금의 항목별 비용과 동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할 장비(들)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금 제공처가 보조금을 승인하면 사무국은 적시에 착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금 제공처로부터 수령한 기금은 재정규칙 제21조에 따라 특별목적기금계좌에 입금한다. 기금 제공처가 착수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프로젝트의 책임연구자는 사무국에 원래 기금 제공처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착수금의 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국장이 필요한 협의를 거쳐 그러한 착수금의 지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한 기금은 NPAFC 과학연구 특별기금에서 임시로 제공된다. 특별기금에서 제공한 임시 지출금은 기금 제공처에서 기금을 수령하는 즉시 상환한다.
5. 사무국장은 연례회의에서 특별목적기금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외부보조위임